

#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 제·개정 연혁

- 2013년 1월 17일 제정
- 2013년 8월 19일 개정
- 2014년 4월 2일 개정
- 2015년 8월 20일 개정
- 2017년 1월 16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가 시행하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 제2조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단, 사임, 임기만료, 미등록 등의 사유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도 포함한다.

- ① 협회 임직원
- ② 시도협회, 연맹단체 및 소속 임·직원
- ③ 협회에 등록된 단체(팀)와 선수, 지도자 등 그 소속원
- ④ 심판등 기타 협회의 행정적용을 받는 대상

### 제3조 (심의기관)

- ① 협회가 인정하는 징계심의 기관은 아래와 같다.
  1. 징계위원회
  2. 시도협회, 연맹단체의 징계위원회
  3. 기타 정관 및 징계규정에서 명시한 징계심의 기구
- ② 징계위원회는 협회가 관장하는 징계사안 중 1차 심의를 다루는 기구로서, 소위원회를 두어 필요한 징계처분을 다루도록 할 수 있다.
- ③ 시도협회, 연맹단체의 징계위원회는 각 단체의 관할 범위내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관장한다.
- ④ 기타 정관 및 징계규정에서 인정되는 징계심의 기구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인사위원회는 협회 직원에 대한 징계를 관장하며, 협회 처무규정에 따라 징계를 심의 한다.

2. 재심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관장하며, 재심사건 발생 시 회장은 징계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협회 이사급 이상 임원(징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가운데 3인 내지 5인을 임명하여 구성하며, 징계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3. 특별징계위원회는 협회, 시도협회 및 연맹 임원에 대한 징계를 다루는 기구로써 징계사건 발생시, 재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며, 특별징계위원회의 재심사건은 이사회에서 관장한다. 단, 당연직 대의원인 시도협회와 연맹단체 대표자에 대한 징계사건은 이사회에서 1차로 관장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재심사건을 관장한다.
4. 총회 및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징계 권한을 갖는다.
5. 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 규정상에 정해진 긴급제재 처분을 다룬다.

#### 제4조 (징계대상 행위의 성립과 처벌)

- ① 징계대상 행위(이하 '위반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처벌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한다. 단, 징계대상 행위 후 규정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처벌 양형기준이 과거 규정보다 경한 때에는 새로 제·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
- ② 제소 또는 위원회가 심의할 사건은 위반행위 발생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건에 한한다. 단, 승부조작, 금품비리, 성범죄 관련 징계사항은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5조 (증거우선의 원칙)

모든 징계는 그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여 시행한다.

#### 제6조 (징계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단, 경기규칙 위반행위 및 이 징계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의 유형 1, 유형 2의 가, 나, 라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 제7조 (자수 등)

징계대상 행위를 한 후 징계권한이 있는 기관에 자수 또는 자백한 때에는 그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2장 징계위원회

#### 제8조 (기능)

징계위원회는 협회 정관 제17조, 제52조에 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아래 사항을 심의하며, 긴급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징계의 심의, 결정과 집행관련 사항
2. 경기와 관련하여 즉시 조치해야 할 징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처리
3. 회원단체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4. 징계심의 사항 등에 대한 조사
5. 경기장 질서 확립을 위한 건의 및 위임된 건의사항 처리
6. 기타 징계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 건의 및 자문

**제9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 범위 내에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②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중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 ⑤ 협회 사무처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제10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4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 또는 총원하는 경우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11조 (운영)**

- ① 징계위원회는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청, 제소, 위원장의 필요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심의대상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팩스, 이메일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차기 징계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조직(협회 사무처, 분과위원회, 시도협회, 연맹단체 및 등록팀)과 관련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조직 및 관련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징계권)**

- ① 시도협회는 및 연맹단체는 본 규정 제3조 3항에 따라 소속 회원에 한하여 징계를 한 경우 징계 확정후(재심이 진행된 경우 재심확정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는 협회 재심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협회 징계위원회는 보고된 각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가 내린 징계처분 적용범위 및 수위에 대한 재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각 단체의 징계 심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협회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재심을 요구하거나, 직접 관여할 수 있다.
- 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협회와 회원단체 또는 회원단체들 간의 이중 처벌은 금지된다.

**제3장 징계****제13조 (종류)**

① 대상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대 상	징계의 종류	정 의
등록단체(팀)	제명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명부에서 삭제함.
	자격정지	1년 이상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며, 해당 기간 동안 등록이 불가됨.
	출전정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경기수의 출전을 정지시킴.
	하위리그 강등	징계의 사유로 팀의 소속리그를 하위 단계로 격하시킴.
	실격	해당 대회에 참가자격이 박탈되며, 선수 개인기록을 제외한 팀의 기록은 무효화 한다.<2015. 8. 20. 개정>
	승점감점	팀이 경기에서 취득한 승점을 감점 또는 무효화시킴.
	경기제한	무관중 경기진행, 홈경기 개최금지 또는 제3지역에서 경기를 진행토록 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함.
	벌금	벌에 대신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며 그 금액은 금100만원 이상으로 함.
등록단체의 소속원(선수, 지도자, 임원), 심판 등 협회의 행정적용을 받는 자	경고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적함.
	제명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명부에서 삭제함.
	자격정지	1년 이상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며, 해당 기간 동안 등록이 불가됨
	출전정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은 유지되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또는 일정 경기수의 출전을 정지시킴.
	벌금	징계의 사유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며 그 금액은 금50만원 이상으로 함.
협회, 시·도 협회 및 연맹단체의 임원	경고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함.
	제명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고 명부에서 삭제함
	해임	해당 직위를 박탈함.
	자격정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협회, 시·도 협회 및 연맹단체의 직원	벌금	징계의 사유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며 그 금액은 금50만원 이상으로 함.
	경고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함.
	제명	근로계약의 종료와 더불어 협회 및 회원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이 금지되며, 퇴직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내로 금액 지급
	해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정직	직위는 유지하나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 급여의 1/3만 지급함.
	감봉	직무에 종사하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총 급여의 2/3만 지급함.
협회, 시·도 협회 및 연맹단체의 직원	근신	7일 이상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일일 반성문 제출
	경고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적함.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	제명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명부에서 삭제함.
	자격정지	1년 이하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
	권리제한	1년 이하 일정기간 단체로서의 권리를 제한
	벌금	징계의 사유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며 그 금액은 금300만원 이상으로 함.
	경고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적함.

주) 위 징계와 부과하여 사회봉사, 교육수강 처분을 병과 할 수 있다.

- ② 경기중 경고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은 심판의 고유 권한이며, 대회규정에 의한다.
- ③ 경기중 경기물수, 재경기, 경기무효 등 징계규정에 포함할 수 없는 조치는 대회규정으로 정한다.
- ④ 권리제한 및 자격정지 :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가 협회정관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심각히 위반하였을 때에는 협회 정관 제17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⑤ 기피대상자 : 협회 회원단체나 그 소속원이 아닌 자로서 협회의 활동에 해악을 끼치고 축구계의 명예를 훼손하여 축구의 발전과 축구인의 권익을 해하는 자로서 기피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 ⑥ 본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FIFA, AFC,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른다.

#### 제14조 (심의 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징계를 심의할 수 있으며, 음해성 제보는 징계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대회 중 또는 대회 전, 후 발생한 부정 참가, 승부조작, 경기진행 방해 등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2.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 해태 등, 또는 이외의 확인 또는 신고 받거나 제소 받은 비위사실
3. 상기 1, 2호와 유사하여 협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

#### 제15조 (제소)

- ①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감독관, 심판, 관련 팀의 대표자가 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할 수 있다. 단, 경기 중의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경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위행위 등에 대한 제소는 피해 당사자(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관련 단체의 대표자가 할 수 있다.
- ③ 위 제소는 별지 1호 서식을 참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 (징계의 심의)

징계심의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협회는 지체 없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인지한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의할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17조 (출석 및 진술권의 부여)**

- ①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개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징계를 심의, 의결할 때에는 징계 심의대상자가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거나 서면 제출로 해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도 진술권을 보장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징계 혐의자가 요청할 경우에 증인이나 관련자에 대한 위원회 출석이나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 증빙자료, 기타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 ⑤ 징계심의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이용가능한 증거자료를 참고하여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
- ⑥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가 연락처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심의대상자 소속단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련자 제외)**

징계심의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9조 (감경 및 가중)**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는 징계심의대상자의 과거 행적·정상 등을 참작하여 유형별 징계기준보다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으나, 감경은 2분의 1 · 가중은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종전 징계의 집행이 종결된 이후, 유사한 위반행위로 2년 이내에 재차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감경사유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 (결과 통지 및 보고)**

협회는 징계의 결정이 있을 후 그 결과에 대해 징계 대상자 본인 및 소속단체의 대표에게 즉시 통지한다.

**제21조 (징계의 의결 및 효력발생)**

징계는 당사자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징계결정의 최종 확정일까지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

**제22조 (재심의 청구)**

- ① 재심은 제3조 제4항 제3호의 징계심의 기관의 사항에 대해 해당 단체 재심 기관에서 이를 재심의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징계처분 대상자나 제소자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근신 및 경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및 긴급제재처분에 대한 사항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③ 재심청구는 징계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별지 2호 서식 참조)
- ④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협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후 제18조와 같이 조치한다.
- ⑤ 재심에 의한 징계 확정은 협회의 최종 결정이다.

### 제23조 (이의신청)

- ① 이의신청은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최종 징계심의 결정 사항에 대해 협회에서, 협회의 최종 징계심의 결정에 대해 대한체육회 또는 FIFA에서 재심의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재심결과에 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회원단체의 재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회원단체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고, 당해 회원단체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서(별지 2호 서식 참조) 및 징계자료를 첨부하여 협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③ 협회의 재심결과에 대하여 징계 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협회의 재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고, 협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징계자료를 첨부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FIFA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위 제2항 및 제3항의 이의신청은 해당 징계 이의심의 기관의 의결로써 최종 확정된다.

### 제24조 (징계의 감경, 해제)

- ① 징계의 집행 중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 중인 징계를 감경하거나 잔여 집행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명의 경우 징계처분일로부터 7년,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무기한 출전 정지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시행일로부터 5년, 유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각각 경과해야 징계의 감경 또는 해제를 심의할 수 있다.
- ③ 징계의 감경 또는 해제는 대상에 따라 해당 징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건의하고,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④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는 위 제2항 및 3항에 준하여 감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단, 협회가 징계를 관할범위 외로 확대하거나 징계를 가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5조 (사면)

사면권의 발의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제26조 (징계 기준)

- ① 행위에 따른 유형별 징계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 ② 경기중 경고 및 퇴장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한 경기에서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즉시 퇴장조치 한다.
  - 나. 한 대회에서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해당 대회의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대회운영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다. 경기중 퇴장당한 선수나 지도자는 해당 대회의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퇴장 행

위의 경중에 따라 대회 주최기관 또는 조직위원회가 추가로 해당자에 대해 경기출전을 금지할 수 있다.

- 라. 한 경기에서 1회 경고를 받은 뒤 다른 반칙행위로 경고 없이 바로 퇴장을 당한 선수의 경우, 앞서 받은 경고는 유효하다.
- 마. 팀의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퇴장당한 선수나 지도자는 징계위원회가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는 한, 다음에 참가하는 대회 첫 경기의 출전이 자동으로 금지된다.

### 제27조 (긴급제재)

- ① 경기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조치한다.
- ② 긴급 제재라 함은 경기와 관련하여 선수, 심판 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경기장 질서 유지 및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협회 징계 소위원회가 팀, 선수, 임원, 관중 등에 대해 취하는 즉각 조치를 말한다.
- ③ 대회 조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제재 조치를 취한다.
  - 가. 대상자에 대해 퇴장 조치와 함께 필요시 해당 대회 잔여 경기 출전 금지 및 법질서 유지 기관을 통한 제재 요청.
  - 나. 특정팀의 개입에 의해 관중 난동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팀에 대해 긴급 제재 조치 및 필요시 추가로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 요청.
  - 다. 긴급 제재 사건 발생 즉시 해당 상황을 [별지 3호 서식 참조]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징계 위원회에 보고.
- ④ 징계 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제재 조치를 취한다.
  - 가. 위반 행위에 대해 소위원회 심의 후 최대 1개월 또는 4경기 이하 출전정지 조치.
  - 나. 출전 정지 1개월 또는 4경기를 초과하는 징계가 필요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추가 징계 요청.
  - 다. 긴급 제재 조치 후 즉시 징계위원회에 결과 보고.
- ⑤ 징계 확정시 긴급 제재 기간은 징계 기간에 포함된다.

### 제28조 (고소, 고발 등 법에 계류중인 사건의 처리 등)

법에 계류 중인 사건이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협회의 징계기준으로 처리대상이 되는 사안은 별도 징계할 수 있다.

## 부 칙(2013. 1. 17. 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한체육회 징계규

정 및 각종 대회규정을 준용하며, 위 규정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제3조(시도협회 및 연맹의 적용)**

시도협회 및 연맹은 자체 징계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본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부 칙(2013. 8. 19. 개정)**

### **제1조(시행일)**

본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 4. 2. 개정)**

### **제1조(시행일)**

본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 8. 20. 개정)**

### **제1조(시행일)**

본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1. 16. 개정)**

### **제1조(시행일)**

본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유형별 징계 기준

유형	내용	대상 및 징계 기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심판, 감독관	팀	협회, 시도협회 연맹임원	관중 또는 불특정다수, 기타
1. 경기중 일반적 위반행위	심판에 의한 경고 및 퇴장	대회규정과 경기규칙에 의함	대회규정과 경기규칙에 의함	-	-	대회규정과 경기규칙에 의함	대회규정과 경기규칙에 의함
2. 경기관련 특정 위반행위	가. 폭력 행위						
	① 선수에 대한 폭력	자격정지 1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경기제한, 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제명	자격정지 3년 이상 - 해임	형사고발 및 경기장 출입금지
	② 심판에 대한 폭력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③ 지도자, 임원, 관중 등에 대한 폭력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3년 이상 - 해임	
	④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4년 이상 - 제명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제명		해임 또는 제명	
	나. 폭언, 모욕 및 위협 행위	출전정지 6월 이상 - 자격정지 2년 이하	자격정지 1년 이상 - 자격정지 5년 이하	자격정지 1년 이상 - 자격정지 5년 이하	상 동	자격정지 1년 이상 - 해임	
	다. 질서 위반행위						
	① 경기장 무단 난입	출전정지 2월 이상 - 출전정지 1년 이하	출전정지 3월 이상 - 자격정지 1년 이하	-	경고, 경기제한, 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제명	자격정지 1년 이상 - 3년 이하	형사고발 및 경기장 출입금지
	②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월 이상 - 자격정지 3년 이하(손해배상 병과)	출전정지 6월 이상 - 자격정지 3년 이하(손해배상 병과)	-		자격정지 1년 이상 - 제명(손해배상 병과)	
	③ 폭력조장, 선동 및 오물 투척	출전정지 3월 이상 - 자격정지 3년 이하	출전정지 6월 이상 - 자격정지 3년 이하	-		벌금 이상 - 해임	
	④ 관중석 난동 방조	-	출전정지 2월 이상 - 자격정지 2년 이하	-		벌금 이상 - 자격정지 1년 이하	
	⑤ 건전한 응원 풍토 위반	-	-	-		벌금 이상 - 자격정지 1년 이하	
⑥ 과도한 판정항의	경고 이상 - 출전정지 3월 이하	경고 이상 - 출전정지 3월 이하	-	경고 이상 - 자격정지 1년 이하		-	

2. 경기관련 특정 위반행위	<b>라. 대회규정 위반행위</b>				경고, 경기제한, 벌금, 출전정지	좌측의 위반행위에 대해 교사하는 경우 자격정지 1년이상 - 해임				
	① 부정선수의 대회참가 <sup>1)</sup>	2년 이하 자격정지 (미등록 선수의 경우 등록금지)	자격정지 3년 이상 - 무기한 자격정지	-				-		
	② 출전정지선수의 경기출 전 <sup>2)</sup>	경고 이상 - 출전정지 3월 이하. 고의성이 있을 경우 자격정지 1년 이하	경고 이상 - 출전정지 6월 이하, 고의성이 있을 경우 자격정지 3년 이하	-				-		
	③ 대회 또는 경기출전 포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	-	자격정지 1년 이하	-				-		
	④ 경기도중 운동장 이탈 또는 이탈 교사	출전정지 1월 이상 - 6월 이하	자격정지 1년 이하	-				자격정지 1년 이하		
	⑤ 고의적 경기지연	출전정지 1월 이상 - 1년 이하	출전정지 2월 이상 - 자격정지 1년 이하	-				자격정지 1년 이하		
	⑥ 무자격 지도자 벤치 착석	-	자격정지 1년 이상 - 5년 이하 (미 등록지도자는 등록금지)	-				-		
	<b>마. 경기관련조작</b>							경기제한, 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제명	해임 또는 제명	
	① 승부조작 <sup>3)</sup>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제명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제명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제명						해임 또는 제명
	② 불법배팅참가 <sup>4)</sup>	<u>출전정지 6월 이상</u> - <u>무기한 자격정지</u>	<u>자격정지 2년이상</u> - <u>무기한 자격정지</u>	<u>자격정지 2년이상</u> - <u>무기한 자격정지</u>						해임 또는 제명
<b>바.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b>	자격정지 5년 이상 - 제명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제명	제명	해임 또는 제명						

2. 경기관련 특정 위반행위	사. 금지약물(도핑)행위	FIFA와 AFC의 도핑방지규정(Anti-Doping Regulation)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방지규정을 준용한다.(2017. 1. 16. 개정)					
3. 명예 실추 행위	협회, 축구단체, 국가대표팀 또는 축구인의 명예 실추	자격정지 1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1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1년 이상 - 제명	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하위리그 강등, 제명	자격정지 1년 이상 - 제명	-
4. 직권남용 행 위, 무고 또는 위증행위	①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②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무고하는 행위	출전정지 1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1년 이상 -제명	자격정지 1년 이상 - 제명	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하위리그 강등, 제명	자격정지 1년 이상 -제명	-
5. 금전비리 행위 등	가. 배임, 횡령, 절도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금전, 향응등을 제외하거나, 이를 시도 또는 요구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년 이상 5년 이하	-
	나. 향응 및 뇌물수수 행위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금전, 향응 등을 제외하거나 시도한 경우에는 출전정지 1년 이상 - 3년 이하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금전, 향응 등을 제외하거나 시도 또는 요구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이상 - 3년 이하	자격정지 5년 이상 - 제명, 금전,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년 이상 - 5년 이하			-
	다. 불법 스카우트 및 거래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5년 이상 - 제명			-
6. 협회규정 및 결정사항 위반 행위	가. 정관 위반	경고 - 제명	경고 - 제명	경고 - 제명	경고, 경기제한, 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제명	경고 - 제명	-
	나. 등록규정 위반	경고 - 무기한 자격정지	경고 - 무기한 자격정지	경고 - 제명		경고 - 해임	-
	다. 각급 대표팀 규정 위반	경고 - 무기한 자격정지	경고 - 무기한 자격정지	-		경고 - 해임	-
	라. 기타 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	경고 - 무기한 자격정지	경고 - 무기한 자격정지	경고 - 제명		경고 - 해임	-

7. 성범죄 등 차별행위	가. 성범죄(성폭행, 추행)	자격정지 2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제명	해임 또는 제명	-
	나. 성희롱	출전정지 1년 이하	자격정지 2년 이하	자격정지 2년 이하		자격정지 2년 이하	
	다. 성, 국적, 인종 및 종교에 따른 차별	출전정지 3월 이상 - 자격정지 2년 이하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자격정지 3년 이하	자격정지 1년 이상 - 3년 이하		자격정지 1년 이상 - 자격정지 3년 이하	
8.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언어폭력, 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제한 등 부당한 제재행위, 선수 지도 중 흡연 또는 음주 행위(선수의 대상자에 한정)	출전정지 1월 이상 - 1년 이하	출전정지 3월 이상 - 자격정지 2년 이하	-	벌금, 승점감점, 출전정지 1년이하	벌금 이상 - 자격정지 2년 이하	
9. 기타	가. 기간 단위의 징계는 해당 기간 중의 진행되는 경기 수로 전환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경기관련 특정 위반행위의 경우 소속 등 경기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항도 그 대상이 된다 다. 선수, 지도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소속 등록팀 지도자 및 등록팀이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등록팀 지도자 및 등록팀에 대하여도 관련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라. 본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징계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마. 범죄행위로 인하여 본 징계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죄로 판단된 사항의 경우는 위 3항 명예실추 행위를 적용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 아래징계의 대상별 경중은 징계규정 제12조 참조.

- 1) ‘부정선수의 대회참가’라 함은 타 등록팀 선수, 미등록 선수를 소속 등록팀 선수의 유니폼을 입히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회(경기)에 출전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소속 등록팀 선수사이의 경우도 동일하다.
- 2) ‘출전정지 선수의 경기출전’이라 함은 어느 선수가 경고의 누적이나 전(前)경기의 퇴장 등의 사유로 당해 경기에 출전할 자격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음에도 출전한 행위를 말한다.
- 3) ‘승부조작’이라 함은 승패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승부 또는 득점을 조작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4) ‘불법배팅’이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 알선 및 방조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동일 행위를 말한다.